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10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: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(2022. 11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-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과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이 제정됨에 따라, 그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답례품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5조)

-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2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고향사랑기부금법”)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임.
-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답례품에 관한 사항임. 「고향사랑 기부금법」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써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, 답례품의 종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.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.
- 안 제6조는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금 기탁서 접수 및 납부 영수증 발급, 기부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확인 등 사무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7조부터 제22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임. 「고향사랑기부금법」 제11조에서 모금·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의무화 하고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송부한 ‘참고조례안’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68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1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23.1.1.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하여,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나. 답례품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제5조)
- 다.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2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,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 - 3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
5) 위원회 운영사항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2. 10. 13. ~ 11. 2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답례품의 종류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
2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마을기업, 사회적 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
3. 기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물품, 서비스 및 유가증권

제3조(답례품비의 지급)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제4조(답례품 선정위원회) 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답례품 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
2.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

3.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·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, 지역화폐 관련 부서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나.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

다. 상품·유통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

라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선정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기타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,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)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전성,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

2. 답례품의 공급·보관·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

3. 최근 3년간 생산·공급 및 매출액

4.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정 금융기관의 위탁)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
2.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
3.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
4.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
5.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

제7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
2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제8조(기금의 사용 목적)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·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② 기금은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·관리한다.

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제10조(회계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: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
2. 기금출납원: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

제11조(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)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2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3.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

하여 구성한다.
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, 예산 관련 부서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

나.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
다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

2. 질병, 사망,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3.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

제1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5. 위원이 해당 안전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
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.

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8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

구분하며,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,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·보존해야 한다. 다만,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심의서로 대체한다.

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

제19조(심의위원회의 간사)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존에 관한 사무
3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

제20조(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)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,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·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21조(기금운용계획의 수립)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22조(기금의 결산)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회에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
 2.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 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서류
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